

##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| 지 적 사 항  | 조 치 내 용   | 처 리 |
|--|---|-----|
| 위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<br>많은 업체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조정<br>(시정사항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원은 「정관」, 「인사 규정」 및 「위원회운영 및 재산의 사용·관리규정」에 근거하여 이사회 14명, 운영위원회 7명으로 구성 운영</li> <li>○ 각 위원회의 임기 종료시 섬유분야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</li> </ul>  | 완료  |
| 중대 사안은 서면심사로 하지 않도록 개선<br>(시정사항)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사회 안건 심의는 연구원 「정관」 및 「이사회 운영규정」을 준수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감사이후 이사회 3회(42~44차)개최, 서면심사 없음</li> </ul> </li> </ul>  | 완료  |
| 이사회의 참석수평이 높은 수준으로 판단 조정 필요<br>(처리요구)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사회 개최(‘16.02.23)하여 규정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참석수당 20만원→15만원으로 조정 완료</li> </ul> </li> </ul>  | 완료  |
| 장비 활용을 제고 대책을 마련 및 활용율이 저조한 장비는 구조조정이 필요<br>(처리요구)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“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”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<b>장비활용률 : 60.5%(2016. 9월말)</b></li> </ul> </li> <li>○ 저활용 및 미활용되고 있는 장비 발생시 불용장비 처리 등 구조조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완료  |
| 경영평가 결과, 기관의 비전과 전략 추상적이고 도와 소통 부족 등 성적이 향상 보완<br>(건의사항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북도 정책에 부응한 연구원 명칭변경과 비전선포(‘16.02.17)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<b>비전 : 글로벌 융복합 섬유기술 선도기업 육성 실현</b></li> </ul> </li> <li>○ 연구원은 대규모 사업,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강 등의 현안 사업에 도 및 의회와 사전 소통</li> </ul> | 완료  |
| 연구원과 도의 섬유기반 산업들이 상생 발전<br>(건의사항)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15년 R&amp;D 수행은 총55업체이며, 이 중 57%인 31업체는 전북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소재, 신기술 개발·보급 및 멘토링 사업을 통한 업체 애로사항 해결 등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완료  |

| 지 적 사 항   | 조 치 내 용   | 처 리        |
|---|---|------------|
| <p>노후장비의 수리통한 장기간<br/>활용 및 활용도가 부진한<br/>장비는 제때 교체<br/>(건의사항)</p>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후화가 심각한 장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마련 중에 있는 장비교체기금을 통하여 교체 진행예정(179백만원)</li> <li>○ 연구장비공동이용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한 장비 개선 수행<br/>- 15.11.01.~18.10.31 (36개월) / 4,666백만원 (연구원 144백만원)</li> <li>• 10개 장비 13건의 가능향상 개선(2016. 9월말 기준)</li> </ul>  | <p>완료</p>  |
| <p>공동으로 참여한 동료<br/>직원들 간 성과금 격차가<br/>크지 않도록 조정<br/>(건의사항)</p>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지식재산권 규정」에 따라 특허 출원 또는 등록시 연구원을 재산권 권리자로 하고, 임직원이 발명자로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</li> <li>○ 「정부 R&amp;D운영 요령」의 원칙을 준수하여「특별성과급 및 인센티브 지급규칙」에 의거 연구수행 성과의 기여도, 노력도에 따라 3단계 차등비율로 평가하여 등급간 지급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운영</li> </ul>  | <p>완료</p>  |
| <p>기관장의 권한 과도하<br/>므로 법적 검토<br/>경리관을 두어 집행권한<br/>분리 검토<br/>(건의사항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원의 인사권은 연구원 「인사규정」제5조, 제7조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하도록 되어있음.</li> <li>○ 예산집행 권한은 연구원 「재무회계규정」제5조에 경리관을 원장으로, 지출원을 행정경영실장으로 정함</li> <li>○ 동 규정 제7조에 직무위임 규정이 있어 지출원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음<br/>- 300만원 이하의 제조-용역 / 200만원 이하의 물건 구입<br/>- 급여 등 인건비, 여비, 복리후생비, 관공비, 업무추진비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기타 의무적경비</li> </ul> | <p>완료</p>  |
| <p>안전보호 융복합 제품<br/>산업에 혼신을 힘을 다하여<br/>기술개발과 기업자원에 매진<br/>(건의사항)</p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16년도 국가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재부 및 KISTEP의 타당성조사에 대응수행</li> <li>○ 정책토론회, 포럼 등 정책적 차원에서 이슈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참여</li> <li>○ 국회의원 및 관련 정부부처의 지원 요청을 위한 대외 활동</li> <li>○ 기재부 및 KISTEP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(16. 11 ~)</li> </ul>   | <p>진행중</p> |

| 지 적 사 항   | 조 치 내 용  | 처 리 |
|---|--|-----|
| 사업화 할 수 있는 분야를<br>발굴해서 기술이전으로<br>기업이 혜택받도록 노력<br>(건의사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 지역 소재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 기획에 참여시키고 사업화를 통해 매출발생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전략으로 사업수행</li> <li>○ 연구원 자체 Seed R&amp;D를 활성화시키고 Seed R&amp;D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에 매진하여 향후 기술이전을 통한 도내 기업들과 동반성장을 도모</li> </ul>      | 완료  |
| 공공구매 실적을 영세한<br>장애인 기업, 사회적기업<br>협동조합 등에 도움이 될<br>수 있도록 구매 실적을<br>늘려가기 바람<br>(건의사항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및 「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」에 근거하여 총구매액의 1%이상을 구매<br/>           * 16년 9월말 구매실적 : 1.01%(1,798천원)</li> <li>○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입찰 시에도 도내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제품,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</li> </ul> | 완료  |